

직업기초·교양교육센터 규정

- 제정 : 2021. 12. 1.
- 개정 : 2022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직업기초·교양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센터는 본교의 직업기초·교양교육 관련 업무지원을 통해 본교가 추구하는 창의 융합 미래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운영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
3.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
5.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환류 개선에 관한 사항
6. 교양교육과정 연계 핵심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핵심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관리에 관한 사항
8. 기타 직업기초·교양교육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센터장) ① 본 센터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본 센터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장 외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본 센터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①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직업기초·교양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직업기초·교양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
- ②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개발
- ③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교재 및 콘텐츠 개발
- ④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 평가
- ⑤ 핵심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
- ⑥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위원의 2분의 10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총당한다.

제11조(예산 및 결산)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해산)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